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 9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1.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가. 제안이유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개정, 협의회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성자치단체 변경 및 위원명시(제3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규 가입(7개 자치단체로 함)

▶ 구성자치단체(6개 시 → 7개 시·구) :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부평구,
서울 강서구

• 각 자치단체의 시장·구청장을 위원으로 함

○ 사무소의 위치(제4조)와 회의(제9조) : 일괄된 자료관리를 위해 사무소 위치는 부천시에 두고 제
9조제5항에 회의관련 자료 이관사항을 둠

○ 회장의 임기제 도입(제6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토록 함

▶ 단,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로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구도 우리 시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합니까?	○ 네. 똑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합 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의안번호	제430호
의결년월일	2001. 1. 19 (제84회)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2. 제안이유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규약을 개정, 협의회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구성자치단체 변경 및 위원 명시(제3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규 가입(7개 자치단체로 함)

▶ 구성자치단체(6개 시·구 → 7개 시·구) :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부평구, 서울 강서구

○ 각 자치단체의 시장·구청장을 위원으로 함

나. 사무소의 위치(제4조)와 회의(제9조) : 일괄된 자료관리를 위해 사무소 위치는 부천시에 두고 제9조제5항에 회의관련 자료 이관사항을 둠

다. 회장의 임기제 도입(제6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토록 함

▶ 단,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로 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②위원은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하되 상반기는 3~4월 중에 하반기는 9~10월 중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 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구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제정 및 기타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